

제 호

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(법인등록번호:)

3. 양성분야:

4. 지정기간:

5. 소재지:

위 기관을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(시·도지사)

직인